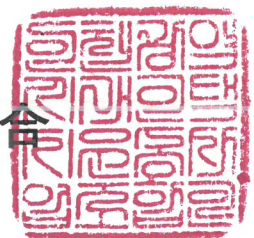


西紀	1983年	8月	2日	制定施行
西紀	1984年	9月	28日	改定施行
西紀	1987年	10月	21日	改定施行
西紀	1990年	4月	30日	改定施行
西紀	1991年	1月	1日	改定施行
西紀	1993年	6月	2日	改定施行
西紀	1995年	1月	25日	改定施行
西紀	2002年	1月	16日	改定施行
西紀	2002年	8月	8日	改定施行
西紀	2020年	9月	17日	改定施行
西紀	2021年	12月	29日	改定施行

給 與 規 定



仁川廣域市個人택시運送事業組合



목 차

제 1	조	(목 적)
제 2	조	(적용범위)
제 3	조	(급여기준)
제 4	조	(급여의 종류)
제 5	조	(본 봉)
제 6	조	(월정급여)
제 7	조	(제 수 당)
제 8	조	(년차수당)
제 9	조	(상 여 금)
제 10	조	(휴직기간 급여)
제 11	조	(요양보상)
제 12	조	(퇴 직 금)
제 13	조	(호봉)
제 14	조	(지급일자)
제 15	조	(지급제한)
제 16	조	(평균 통상 임금정의)
제 17	조	(해 석)
제 18	조	(시 행 일)

제 1 조 (목 적)

본 규정은 본 조합 임직원의 급여에 대하여 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본 규정의 적용범위는 조합 이사장과 전무이사 이하의 전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에 준 한다.

제 3 조 (급여기준)

조합 임직원의 급여는 기본급, 제 수당 및 상여금으로 구분한다.

제 4 조 (급여의 종류)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기본급 및 제 수당.
2. 상여금.
3. 년, 월차수당.
4. 퇴직급여.

제 5 조 (본 봉)

직무의 책임성 및 곤란성에 따라 직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을 말하며 별표 1과 같다.

제 6 조 (월정급여)

직원의 급여는 예산에 책정된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이를 지급한다.

제 7 조 (제 수 당)

임, 직원의 제 수당은 직무수당,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출납수당, 급식보조비 및 기타 수당으로 구분하고 매년 예산 편성에 따른다.

제 8 조 (년차수당)

근로기준법에 준한다.

제 9 조 (상 여 금)

1. 임, 직원에게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연간 지급한다
2. 신규 채용 또는 복권된 지 1년 미만인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1년 이상인자는 기본급에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 10 조 (휴직기간 급여)

1. 취업규칙 제 13 조 1호, 2호, 3호 및 회사 귀책사유가 아닌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휴직 발령월 및 종료월의 급여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 11 조 (요양보상)

산재 보상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 12 조 (퇴 직 금)

1. 임, 직원이 퇴직 또는 면직하였을 때에는 별표 3에 의한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2. 근무 년수 계산에 있어서 1년 미만일 때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3. 근무 년수 1년미만인 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조합 임, 직원이 조합에 손해를 끼쳐 파면 또는 해임되었을 경우에는 민, 형사상의 판결이 종결될 때까지 퇴직금의 지급을 유보한다.

제 13 조 (호 봉)

1. 직원의 호봉은 1호봉부터 시작하여 최고 25호봉까지로 하며 만1년 되는 월에 1호봉씩 가산한다. 단, 신규직원에 한하여 학력, 경력, 군필, 각종 자격증 보유자에 대해서는 호봉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2. 퇴직자가 2년 이내에 재임용 되었을 때에는 퇴직 당시의 호봉으로 한다.
3. 승진을 할 경우에는 승진 당시 호봉에서 1호봉을 감하여 승진토록 한다.

제 14 조 (지급일자)

급여의 지급일자는 익월 25일로 정한다. 단, 25일이 휴일일 때에는 그 전일로 한다.

제 15 조 (지급제한)

다음의 경우에는 급여의 지급을 보류 할 수 있다.

1. 본인이 급여를 수령하지 아니하고 위임장 없이 제 3 자가 수령을 요구할 때.
2. 조합에 손해를 입혀 그 변재가 끝나지 않았을 때.
3. 퇴직 후 사무인계를 고의로 지연할 때.

제 16 조 (평균, 통상임금 정의)

본 규정에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는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제 17 조 (해 석)

본 규정의 애매한 부분의 해석은 전무이사가 한다.

제 18 조 (시 행 일)

본 규정은 1983년 8월 2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1984년 9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1987년 10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1990년 4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1993년 6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1995년 1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2년 1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2년 8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0년 9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1년 12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직원 호봉별 기본 급여표(2020년)

[별표1]

[단위:원]

구분	사원	계장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비고
1호봉	1,803,034	2,054,090	2,339,380	2,597,278	2,830,131	2,949,731	
2호봉	1,837,269	2,094,030	2,385,026	2,648,631	2,881,483	3,006,789	
3호봉	1,871,504	2,133,971	2,430,673	2,699,983	2,932,835	3,063,848	
4호봉	1,905,739	2,173,912	2,476,319	2,751,335	2,984,187	3,120,906	
5호봉	1,939,974	2,213,852	2,521,966	2,802,687	3,035,540	3,177,964	
6호봉	1,974,209	2,253,793	2,567,612	2,854,040	3,086,892	3,235,022	
7호봉	2,008,443	2,293,734	2,613,259	2,905,392	3,138,244	3,292,080	
8호봉	2,042,678	2,333,674	2,658,905	2,956,744	3,189,596	3,349,138	
9호봉	2,076,913	2,373,615	2,704,552	3,008,096	3,240,949	3,406,196	
10호봉	2,111,148	2,413,556	2,750,198	3,059,449	3,292,301	3,463,254	
11호봉	2,145,383	2,453,496	2,795,844	3,110,801	3,343,653	3,520,312	
12호봉	2,179,618	2,493,437	2,841,491	3,162,153	3,395,005	3,577,370	
13호봉	2,213,852	2,533,377	2,887,137	3,213,505	3,446,358	3,634,428	
14호봉	2,248,087	2,573,318	2,932,784	3,264,858	3,497,710	3,691,486	
15호봉	2,282,322	2,613,259	2,978,430	3,316,210	3,549,062	3,748,544	
16호봉	2,316,557	2,653,199	3,024,077	3,367,562	3,600,414	3,805,602	
17호봉	2,350,792	2,693,140	3,069,723	3,418,914	3,651,767	3,862,660	
18호봉	2,385,026	2,733,081	3,115,370	3,470,266	3,703,119	3,919,718	
19호봉	2,419,261	2,773,021	3,161,016	3,521,619	3,754,471	3,976,776	
20호봉	2,453,496	2,812,962	3,206,662	3,572,971	3,805,823	4,033,834	
21호봉	2,487,731	2,852,903	3,252,309	3,624,323	3,857,176	4,090,892	
22호봉	2,521,966	2,892,843	3,297,955	3,675,675	3,908,528	4,147,950	
23호봉	2,556,201	2,932,784	3,343,602	3,727,028	3,959,880	4,205,009	
24호봉	2,590,435	2,972,724	3,389,248	3,778,380	4,011,232	4,262,067	
25호봉	2,624,670	3,012,665	3,434,895	3,829,732	4,062,585	4,319,125	
26호봉	2,658,905	3,052,606	3,480,541	3,881,084	4,113,937	4,376,183	
27호봉	2,693,140	3,092,546	3,526,187	3,932,437	4,165,289	4,433,241	
28호봉	2,727,375	3,132,487	3,571,834	3,983,789	4,216,641	4,490,299	
29호봉	2,761,610	3,172,428	3,617,480	4,035,141	4,267,994	4,547,357	
30호봉	2,795,844	3,212,368	3,663,127	4,086,493	4,319,346	4,604,415	

▶ 2020년 최저임금 2.9% 반영, 시간당 8,590원(1,795,310원)

별 표2

지 급 별	지 급 율
임 , 직원	년간 200% 지급(설날, 하계휴가, 추석, 연말 각 50%씩 4회 지급) 단, 근무기간 1년 경과자 에게만 지급하며, 1년 미만 자는 각 30만원씩 지급한다.

별 표3

1.이사장	평균 임금의 1.5개월분 지급
2.직원(전무포함)	근속 년수에 상관없이 연간 평균 임금의 1개월분 지급
※ 본 규정전의 퇴직금 지급율 적용 대상자는 기존의 지급율을 개정 전 전일 까지만 인정하되 동 적용 제외 대상자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한다. 근로기준법 제34조는 별표 3의 제2항 임.	